

RESEARCH ARTICLE

A Study of the Regulatory Framework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Disputes and the Legal Effects of FRAND Commitments: Mitigat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Conflicts and Improving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s

Chang Kyu Lee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J.D.; Technology Transfer Agent,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ang Kyu Lee (sunrise@cau.ac.kr)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uncertainties and dispute structure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 licensing within the intersection of patent and competition law. It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FRAND commitments as contractual obligations and third-party beneficiary structures, while synthesizing core doctrines on injunctions, determination royalties, and good faith negotiation. This study derives normative implications from market failures, such as patent hold-up, licensee hold-out, and royalty stacking. By comparing the United Kingdom's global rate setting, China's Anti-Suit Injunctions, and South Korea's competition law-centered enforcement, this study identifies a shift from private disputes to jurisdictional competition. This shift escalates transaction costs and results in duplicative litigat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1) 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through procedural agreements; (2) the strategic use of WIPO ADR as an alternative to prolonged litigation; and (3) policy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uding greater transparency, in essentiality verification. Finally,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international predictability, it suggests a phased legislative roadmap for addressing immediate legal gaps before integration into a standalone law. This approach seeks a structural balance between patent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extending beyond a binary opposition between the two to foster a sustainable industrial ecosystem.

Open Access

Received: February 04, 2026

Revised: February 19, 2026

Accepted: June 05, 2026

Published: June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KEYWORDS

standard essential patent, FR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ti-suit injunc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원저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의 규율구조와 FRAND 확약의 법적 효력: 국제 관할권 충돌의 완화와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창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교수, 법학박사, 기술거래사

교신저자: 이창규 (sunrise@cau.ac.kr)

차례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선행연구의 검토

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규범의 개념적 기초
 - 2.1. 표준필수특허(SEP)의 법적 특성
 - 2.2. FRAND 확약의 법적 성질
 - 2.3. SEP 라이선싱 시장의 시장실패
 - 2.4. 소결

3. 해외 주요국의 사법 관할권 분쟁 및 사례 분석
 - 3.1. 총설
 - 3.2. 영국의 사례 분석
 - 3.3. 중국의 사례 분석
 - 3.4.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 3.5. 소결

4. 글로벌 SEP 분쟁 해소와 국내 대응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 4.1. 총설
 - 4.2. 국제 사법공조 및 ADR 체계 강화
 - 4.3. 중소기업 SEP 대응체계 구축
 - 4.4. 단계적 입법을 통한 표준필수특허 규율 체계의 정립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디지털 대전환과 초연결 산업의 확산으로 기술 표준과 표준필수특허(SEP)의 경제·산업적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SEP 라이선싱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분쟁의 구조를 특허법·경쟁법 교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FRAND 확약의 법적 성질(계약적 의무 및 제3자 수익자 구조 가능성)과 금지명령·요율 산정·성실협상 의무를 둘러싼 핵심 법리를 정리하고, 특허 홀드업과 실시자 홀드아웃, 로열티 누적 등 시장실패 요인이 규범 설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나아가 영국의 글로벌 요율 결정 접근, 중국의 반소송금지명령(ASI) 활용,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중심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SEP 분쟁이 사적 권리 다툼에서 관할권 경쟁으로 전환되는 흐름과 그에 따른 국제 예방 훼손·중복소송·거래비용 증가 문제를 규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논문은 주요국 법원 간 최소 절차합의와 모델 기준 논의 등 국제 사법공조의 필요성, 고비용·장기화된 소송의 대안으로서 WIPO 중재·조정 의 실효적 활용 및 글로벌 허브화 가능성, 국내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고도화, 정보 비대칭 완화, 필수성 검증 및 투명성 강화, 법률·재정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 보호와 경쟁질서 확립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기보다, 단기에는 특허법·공정거래법·절차법의 핵심 공백을 보완하고 중·장기에는 단독법 체계로 통합하는 단계적 입법이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표준필수특허, FRAND 확약, 국제재판관할, 반소송금지명령, 대안적 분쟁 해결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대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기의 성능을 넘어 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Connectivity)'에서 판가름 나고 있다.¹⁾ 스마트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앰비언트 컴퓨팅(Ambient Computing)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신산업 생태계에서, 이기종(異機種) 간의 완벽한 상호운용성(相互運用性, Interoperability)을 담보하는 기술 표준은 단순한 규약을 넘어 시장의 진입 장벽이자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²⁾ 이러한 기술적 프로토콜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이하 SEP)는 단순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업의 수익 모델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으로 격상되었다.³⁾

최근 SEP 지형도는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복잡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데이터 통신 기술이 전통적인 모바일 기기를 넘어 자동차, 가전, 스마트 팩토리 등 전 산업 영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관련 특허의 출원과 선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선언된 SEP 패밀리 특허는 약 5배 이상 급증하여 2021년 기준 누적 7만 4천여 건을 상회하였으며, 5G 기술의 상용화와 더불어 2024년 기준 5G 표준특허 선언만 5만 7천 건을 돌파하는 등 소위 특허 덩불(Patent Thicket)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⁴⁾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전장이 하드웨어 제조에서 원천 기술 표준 선점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방증한다.

SEP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력은 실로 막대하다. 모바일 통신 단일 분야에서만 연간 로열티 시장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될 만큼, SEP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⁵⁾ 이에 따라 SEP에 대한 분쟁은 더 이상 기업 간의 사적 이익 다툼에 머무르지 않는다. 주요국 정부와 법원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할권을 확대하고 반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ASI) 등 공격적인 사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SEP 분쟁은 이제 국가의 기술 주권과 안보가 걸린 '총성 없는 전쟁', 즉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 배진원 외 5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입지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2022, 5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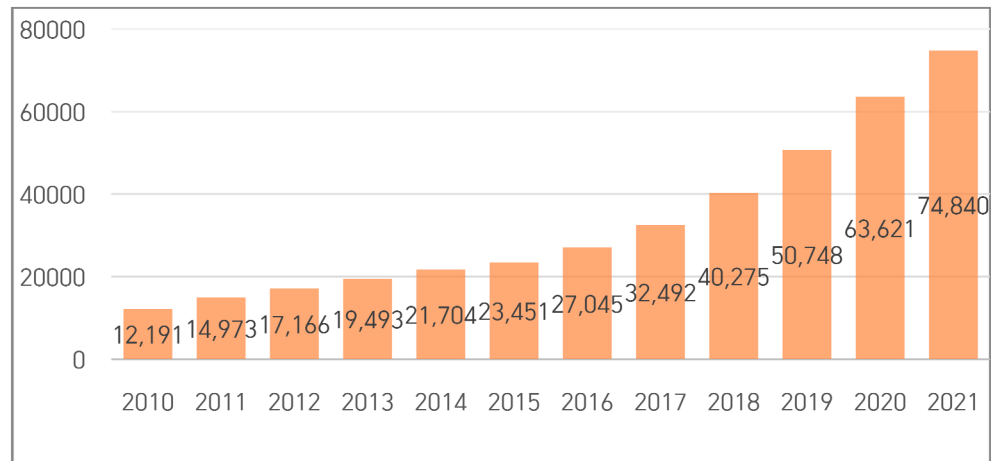
2) 이경선 외 7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및 혁신공유 방안 연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8면.

3) 이상미, "표준필수특허(SEP) 과잉선언의 문제와 필수성 재고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4호(2022), 3면.

4) European Commission, "Empirical Assessment of Potential Challenges in SEP Licensing", European Commission, 2023, p. 16.

5) Kevin Winters, "Cumulative mobile-SEP royalty payments no more than around 5% of mobile handset revenues", IP Finance, <<http://www.ip.finance/2015/08/cumulative-mobile-sep-royalty-payments.html>>, 검색일: 2026. 1. 28.

<그림1 누적 특허 출원 건수 및 특허 패밀리 수>



출처: EUROPEAN COMMISSION, "Empirical Assessment of Potential Challenges in SEP Licensing", 2023, p. 16. (저자가 원문 데이터 기반으로 excel tool을 이용해 직접 재작성함)

※ 가로축(X-axis)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를 의미하며, 세로축(Y-axis)은 해당 기간까지의 누적 특허 출원 건수 및 특허 패밀리 수를 나타냄

SEP는 기술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부여되는 특허권의 독점적 배타성과 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의 개방성 사이에서 본질적인 법적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⁶⁾ SEP 보유자는 표준 채택으로 인해 형성된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 행위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⁷⁾ 반대로 실시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며 정당한 로열티 지급을 회피하는 역 특허 홀드아웃(Hold-out) 문제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⁸⁾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규범은 특허권자에게 혁신에 대한 보상을, 실시자에게는 표준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산업 생태계의 법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FRAND의 구체적인 의미와 실시료 산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글로벌 사법 지형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뒤에서 검토하게 될 내용에서 최근 영국 법원은 글로벌 요율 결정권을 선언하며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 법원은 반소송금지명령(ASI)을 적극 활용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사법적 도구를 동원하고 있으며, 유럽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의 출범으로 새로운 분쟁 해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SEP와 FRAND 규범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주요국 사법 관할권 경쟁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전략과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사법 환경에서 국내 기업 및 정책 당국이 취해야 할 법적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6) 이상미, 앞의 논문, 3-5면.

7) Chrissy Pentheroudakis & Justus A. Baron, "Licensing Term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7, pp. 24-25.

8) Ibid., pp. 10-11.

1.2. 선행연구의 검토

SEP 관련 선행연구는 분석의 관점에 따라 크게 특허법적 접근, 경쟁법적 접근, 그리고 경제·계량적 접근의 세 축으로 구분되어 전개되어 왔다. 먼저 특허법적 접근은 권리 행사와 금지명령 제한 담론 국내 SEP 연구의 효시로 평가받는 박준석(2013)은 표준 채택에 따른 구조적 경쟁 제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지적하였다.⁹⁾ 이 연구는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 홀드업(Hold-up)이 초래하는 시장 왜곡을 분석하고, 미국 eBay 판결 이후의 금지명령 제한 논의를 국내 특허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로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이상미(2022)는 논의의 지평을 권리 행사 단계 이전인 선언하는 단계로 확장하였다.¹⁰⁾ 실제 필수성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과잉 선언의 원인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AI 기반 예측 모델이나 필수성 검증 시스템 등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선언 단계의 비효율 개선에 주안점을 두면서 FRAND 분쟁과 글로벌 사법 관할권 경쟁 간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풍원·정차호(2025)는 최신 국제 판례를 바탕으로 상향식 및 하향식 산정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¹¹⁾ 특히 조정계수 도입 등 실무적 개선안을 제시하며 법원이 글로벌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추진열(2023)은 Qualcomm 판결 등 국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경쟁법적 통제 기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¹²⁾

이 글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EP 분쟁을 글로벌 사법 패권 경쟁으로 재정의한다. SEP 분쟁을 단순한 민사적 갈등이 아닌,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사법 권한을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장(場)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경제와 국제사법, 지식재산권법의 교차점에서 영국, 중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동일 프레임에서 비교 분석한다. 둘째, FRAND 규범의 기능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FRAND를 단순한 사적 계약 규범으로 보지 않고, 글로벌 요율 결정의 정당화 근거이자 관할권 확장의 법적 방안을 분석한다. 이는 FRAND의 규범적 성질을 관할권 경쟁의 명분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궤를 달리한다. 셋째, 영국·중국·우리나라를 잇는 삼각 비교 구조를 구축한다. 서구 중심의 기존 논의를 탈피하여, 글로벌 요율 결정 모델을 제시한 영국과 반소송금지명령(ASI) 기반 공제 모델을 제시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법 중심 모델을 입체적으로 대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단순한 수용을 넘어 전략적 설계의 영역임을 강조한다. 넷째, 해석론을 넘어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판례의 사후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사법 관할권 경쟁의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위험 요인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표준필수특허 공정화법 및 절차법 보완을 위한 입법적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규범의 개념적 기초

2.1. 표준필수특허(SEP)의 법적 특성

SEP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국제전기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및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9) 박준석, “표준특허의 제문제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2013), 109-178면.

10) 이상미, 앞의 논문, 1-36면.

11) 이풍원·정차호, “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2025), 383-428면.

12) 추진열, “FRAND 조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확약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제48권(2023), 349-395면.

등 주요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SSOs)가 제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하여 필연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지칭한다.¹³⁾ 앞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연결 디지털 경제 체제 하에서 기술 표준은 이기종(異機種) 제품 및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담보하고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극대화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기제이며, SEP는 이러한 표준 기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기능한다.¹⁴⁾

SEP의 가장 본질적인 법적 특성은 기술적 회피 불가능성(Unavoidability)에 기인한다.¹⁵⁾ 통상의 상용 특허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변경이나 기술적 우회가 허용되는 반면, SEP는 특정 기술이 표준 규격에 편입되는 즉시 해당 표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그 실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특허와 명확히 구별된다. 예컨대 5G 이동통신 프로토콜을 탑재한 단말기나 기지국 제조사는 퀄컴(Qualcomm),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등이 보유한 SEP 포트폴리오를 우회하여 제품을 설계·생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절대적 필수성은 SEP에 전 세계적 범위의 실시 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침해 입증의 용이성을 제공하여 권리자에게 강력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필수성은 법적 차원에서 특허권자의 시장 지배력 획득으로 직결된다.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해당 특허권자는 표준을 채택한 모든 실시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독점적(De facto Monopoly)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¹⁶⁾ 특히 표준 제정 이후 실시자가 제품 설계 및 생산 설비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대체 기술로의 전환이 불가능해지는 고착 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경우, SEP 보유자는 실시자의 매몰 비용을 레버리지로 삼아 기회주의적 권리 행사를 감행할 수 있는 우월적 협상력을 갖게 된다.¹⁷⁾

이러한 SEP의 구조적 특성은 산업 경쟁 정책 측면에서 양면적 결과를 초래한다. 긍정적 측면에서 SEP는 막대한 R&D 투자를 단행한 혁신자에게 정당한 보상 기제와 강력한 협상력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의 유인을 강화한다. 그러나 반대급부로서, 특허권자가 표준에 의해 형성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금지명령 청구를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여 라이선스 협상을 강제하는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 현상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후속 혁신을 저해하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2.2. FRAND 약속의 법적 성질

FRAND 약속은 SEP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인 SSO(Standards Setting Organization)와 SDO(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련의 법적 구속력을 포괄한다. 이는 특허법이 보장하는 배타적 독점권과 기술 표준의 공공성 및 광범위한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 간의 내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절충안이자 법적 균형 장치로 기능한다.

13) 이풍원·정차호, 앞의 논문, 387-388면.

14) Mohd Javaid et al., "Digital economy to improve the culture of industry 4.0: A study on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Green Technologies and Sustainability*, Vol.2 No.2(2024), pp. 11-12.

15) Ming-Tao Yang & Jinwoo Kim, "Managing the Unavoidable—Recent Developments in Standard Essential Patent Litigation in the U.S. and Europe", Finnegan, <<https://www.finnegan.com/en/insights/articles/managing-the-unavoidablerecent-developments-in-standard-essential-patent-litigation-in-the-us-and-europe.html>>, 검색일: 2026. 1. 28.

16) Chryssoula Pentheroudakis & Justus A. Baron, *supra* note 7, p. 127.

17) *Ibid.*, p. 55.

법적 관점에서 FRAND 확약의 본질적 성격은 일차적으로 표준화기구와 특허권자 간에 체결된 계약적 의무(Contractual Obligation)로 귀결된다.¹⁸⁾ 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이 표준 규격에 반영됨으로써 획득하게 될 시장 선점 효과와 라이선스 수익 창출 기회라는 반대급부를 향유하는 대가로, 표준화기구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용하고 자신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겠다는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확약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을 넘어 사법상 유효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며, SEP 보유자가 표준 채택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나아가 주지하다시피 현대 계약법 이론 및 주요국 판례는 이러한 계약의 효력 범위를 확장하여, 이를 실시자(Implementer)를 위한 제3자 수익자 계약(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으로 구성하는 경향을 확립하고 있다.¹⁹⁾ 동 법리에 따르면, 표준화기구와 특허권자 간에 성립된 FRAND 확약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기술 사용자(실시자)에게 법적 이익을 부여하려는 묵시적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표준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실시자는 해당 계약의 수익자(Beneficiary)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며, 이를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²⁰⁾

이와 같이 제3자 수익자 법리의 확립은 실시자에게 실효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만약 SEP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또는 금지명령을 남용하여 협상 우위를 점하려 할 경우, 실시자는 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원을 확보한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Huawei v. ZTE* 판결 등에서 확인되듯²¹⁾, 이러한 계약적 성질은 라이선스 협상 절차에서의 성실 교섭 의무(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를 구체화하고,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침해 금지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핵심적인 판단 준거로 작용한다.

2.3. SEP 라이선싱 시장의 시장실패

중요한 점은 SEP 라이선싱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 실패의 개연성은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과 실시료 누적이란 두 가지 핵심 경제 이론을 통해 규명된다. 이들 이론은 SEP 보유자가 표준 채택으로 인하여 획득하게 된 독점적 지배력을 기회주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산업 내 공정 경쟁과 기술 혁신 생태계에 초래될 수 있는 구조적 왜곡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18) 즉, FRAND 확약은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예: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에 한 약속이 법적으로는 ‘계약’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Adam Mossoff, “Patent Injunctions and the FRAND Commitment: A Case Study in the 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38(2023), pp. 104-105.

19) 가령, 미국의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9th Cir. 2015)에서 IEEE/ITU 표준 관련 RAND/FRAND 약정이 SSO와 SEP 보유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며, 실시자가 그 계약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계약상 청구)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3자 수익자” 논의의 핵심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된다. 위 판결을 인용한 논문으로는 박준석, 앞의 논문, 136면.

20) 예를 들자면, 5G 표준 스마트폰을 만들려는 회사가, 5G SEP를 가진 회사에게 ‘당신이 표준화기구에 약속한 FRAND 조건대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21)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유럽사법재판소(CJEU) *Huawei v. ZTE*(C-170/13) 판결은 SEP(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한 경우, 곧바로 침해금지(금지명령)를 청구하면 경쟁법(당시 EU 기능조약 제102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금지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실시자)도 함께 따라야 할 ‘협상 절차(프레임워크)’가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and ZTE Deutschland GmbH*, Case C-170/13, Judgment of 16 July 2015 (CURIA).

다.

특히, 특허 홀드업 현상은 실시자가 특정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설계를 완료하고, 제조 설비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해당 기술에 고착화된 이른바 잠김(Lock-in) 상태에 진입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실시자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을 지출한 상태이므로, 대체 기술 표준으로의 전환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해지는 비가역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²²⁾ 이때 SEP 보유자가 FRAND 확약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치를 상회하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선스 협상을 거부할 경우, 실시자는 사업 중단이라는 치명적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열위적 협상 지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 제기되는 금지명령 청구는 SEP 보유자에게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하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중단 위협은 실시자의 협상력을 부당하게 억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의 인상과 R&D 재투자 여력의 감소라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한다.²³⁾

한편, 실시로 누적 문제는 단일 복합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수천, 수만 건의 SEP에 대한 라이선스가 동시에 요구되는 현대 융복합 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²⁴⁾ 개별 특허권자가 전체 표준 기술의 총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단기적 이익 극대화만을 목표로 독립적인 실시료율을 책정할 경우, 이들 로열티의 총합이 제품 전체의 한계 이익을 초과하거나 시장 가격 경쟁력을 잠식하여 시장 형성 자체를 저해하는 소위 말하는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²⁵⁾ 이는 경제학적으로 쿠르노 보완재 문제(Cournot's Complements Problem)로 설명되는데, 다수의 독점적 공급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보완재인 특허권을 공급할 때 전체 라이선스 비용은 급등하고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은 감소하는 이중 마진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²⁶⁾ 실증적으로 스마트폰 산업의 경우 누적 로열티가 제품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7~12%)을 잠식할 위험이 상존하며, 과거 Wi-Fi 표준 관련 연구에서는 개별 요구 요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총 로열티 부담이 제품 판매가를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²⁷⁾

이러한 경제적 위협 요인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산업 내 유효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 법원과 경쟁 당국은 합리적인 FRAND 요율 산정을 위해 개별 특허의 가치를 파편적으로 평가하는 상향식 접근보다는, 표준 기술이 제품 가치에 기여하는 총량을 먼저 산정한 후 이를 개별 SEP의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배

22) Joseph Farrell et al.,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Hold-Up", *Antitrust Law Journal*, Vol.74 No.3(2007), p. 650.

23) Lemley & Shapiro는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다는 위협(the threat of an injunction)"이 특허권자의 협상력을 크게 높여, 특허의 "진정한 경제적 기여"를 넘는 로열티를 협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85(2007), p. 3.

24) Ibid., pp. 2-5.

25) 즉,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은 공유지의 비극(과다 사용)과 반대로, 소유권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과소 이용(underutilization)의 비효율성을 의미한다. Michael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A Concise Introduction and Lexicon", *The Modern Law Review*, Vol.76 No.1(2013), pp. 9-10.

26) 여기서 말하는 '쿠르노 보완재 문제'는 서로 꼭 같이 써야 하는 '세트(보완재)'를 여러 독점자가 따로따로 팔면, 가격이 과하게 올라가고 판매량(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가령,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A특허 + B특허를 둘 다 라이선스 받아야 하는데, A특허권자와 B특허권자가 각각 독점으로 자기 로열티를 정한다면, 각자 "내 몫을 더 올려도 되겠지"라고 판단해 로열티를 올리기가 쉽다. Rabah Amir & Adriana Gama, "On Cournot's Theory of Oligopoly with Perfect Complements", *Documentos de Trabajo No. IV-2025*,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2025, pp. 2-5.

27) Alexander Galetovic et al., "An Estimate of the Average Cumulative Royalty Yield in the World Mobile Phone Industry: Theory, Measurement and Results",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42 No.3(2018), pp. 264-267.

분하는 하향식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실시료 누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SEP와 FRAND 법리의 핵심 과제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실시자를 ‘특허 억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기술 생태계 전체의 동태적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최적의 법적 조정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2.4. 소결

SEP는 기술 표준화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인 동시에, 독점적 권리 행사의 남용 가능성을 내포한 양날의 검과 같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SEP의 법적 특성은 기술적 필수성이 법적 지배력으로 전이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있다. SEP는 현대 산업 표준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특성상 특허권자에게 경쟁 기술을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부여한다. 표준 채택 이전의 기술 경쟁 단계가 종료되고 표준이 확정되는 순간, 실시자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기술적 종속으로 인한 고착 효과(Lock-in)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SEP가 단순한 특허법상의 배타적 권리를 넘어, 실시자의 대체 기술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De facto Monopoly)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둘째, FRAND 약속은 이러한 독점력의 남용을 제어하는 제도적 균형추이자 사법적 구속력의 원천이다. FRAND 약속은 단순한 도덕적 선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표준화기구와 특허권자 간에 성립된 계약적 의무이자, 잠재적 실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수익자 계약으로서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정한 라이선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의무와 권리 남용 금지라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FRAND는 사적 자치 영역인 특허권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여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SEP 라이선싱 시장의 구조적 결함은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SEP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협상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특허 홀드업(Hold-up)과 실시료 누적이라는 시장 실패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개별 특허권자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 행위가 혁신을 저해하고 최종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반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법원의 금지청구권 제한이나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은 단순한 시장 간섭이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서의 이론적 타당성을 갖는다.

그리하여 SEP에 대한 법적 쟁점의 본질은 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혁신 보상과 실시자의 공정한 기술 접근권 사이의 동태적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점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산업 정책과 사법 철학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법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해외 주요국은 어떠한 법리와 판결을 통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3. 해외 주요국의 사법 관할권 분쟁 및 사례 분석

3.1. 총설

SEP와 관련된 글로벌 법적 분쟁은 바야흐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과거의 분쟁이 특허 침해 여부나 로열티 산정액을 다투는 개별 기업 간의 사적 권리에 대한 공방(攻防)에 머물렀다

면, 최근의 양상은 각국 법원이 자국의 사법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표준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사법 패권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SEP가 단순한 기술 자산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물자로 부상했다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사법 원칙인 속지주의에 따르면,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 침해 판단과 로열티 산정 역시 해당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초연결 기술 생태계의 특성과 다국적 기업 간의 글로벌 라이선싱 관행은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를 심화시켰다. 수십 개국에 등록된 수만 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개별 국가 법원마다 파편화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거래 비용과 절차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배경하에 주요국 법원은 사법적 효율성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관할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뒤에서 검토할 영국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일국 법원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글로벌 요율(Global Rate)을 결정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러한 흐름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법원은 반소송금지명령(ASI)을 통해 자국 내 소송 진행 중 타국 법원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하며 사법 주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 집행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경쟁법적 규제라는 독자적인 통제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글로벌 SEP 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영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와 사법적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국의 접근 방식이 어떠한 법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것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질서와 기업의 라이선싱 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3.2. 영국의 사례 분석

2020년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이 선고한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특정 국가의 법원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이른바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Global License Rate)’을 산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을 보유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법적 분수령이었다.²⁸⁾ 이 판결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 대한 글로벌 사법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을 촉발한 기념비적 판례로 평가된다. 이 판결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법리적 토대는 SEP 보유자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등 표준화기구(SSOs)에 제출한 FRAND 약정의 계약적 본질(Contractual Nature)에 있다. 영국 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의 지식재산권 정책(IPR Policy)이 개별 국가 단위의 파편화된 특허권 보호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술 확산을 지향한다는 목적론적 해석에 주목하였다.²⁹⁾

재판부는 FRAND 약정을 단순한 선언적 행위가 아닌, 실시자(Implementer)를 수익자로 하

28) UK Supreme Court,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UK) Co Ltd UKSC 37”. UK Supreme Court,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18-0214>>, 검색일: 2026. 1. 28.

29) 즉, ETSI 정책은 2G/3G/4G 같은 표준 기술이 국가별로 막히지 않고 전 세계에 자유롭게 퍼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특허는 국가별 개별 라이선스와 분쟁으로 처리되지만, ETSI SEP는 글로벌 일괄 라이선스와 FRAND로 통합 해결이 원칙이다. Huawei처럼 글로벌 사업자가 국가마다 따로 싸우면 기술 보급이 막혀 ETSI 정책을 위반하므로, *Unwired Planet v Huawei*에서 영국 법원은 ETSI 정책을 근거로 전 세계 FRAND 조건(로열티율 포함)을 직접 정한 것이다.

는 유효한 제3자 수익자 계약(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시자가 영국 시장 내에서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라이선스를 요청할 경우, 관할 법원은 당해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 요율을 산정하여 제시할 권한을 갖게 된다. 특히 법원은 다국적 기업 간의 SEP 라이선싱이 국가별로 세분화되어 체결되기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Global Portfolio) 단위로 일괄 타결되는 것이 확립된 산업계의 실무 관행(Industry Practice)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글로벌 요율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³⁰⁾ 영국 법원은 전통적인 특허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법적 효율성(Judicial Efficiency)을 우위에 두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였다. 수만 건의 SEP가 상호 연결된 현대 기술 산업 생태계에서, 각국 법원이 자국 영토 내의 요율만을 개별적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기업들은 수십 개국에서 동일한 쟁점의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비효율에 직면하게 된다.³¹⁾ 이는 막대한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의 발생과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영국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FRAND 조건에 합의할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성실한 실시자(Willing Licensee)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원이 산정한 글로벌 요율이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FRAND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곧 특허권자에게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인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령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판결은 영국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영국 내에서 제품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국 법원이 책정한 전 세계 요율을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국의 사법적 관할권과 영향력을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영국을 글로벌 SEP 분쟁 해결의 요충지(要衝地)로 부상시키는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관할권 행사는 이후 중국 법원이 반소송금지명령(ASI)을 활용하여 자국의 글로벌 요율 결정권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관할권 경쟁(Jurisdictional Competition)을 점화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SEP 분쟁의 성격이 개별 국가 단위의 특허권 침해 문제를 넘어, 어느 국가의 사법부가 글로벌 시장의 표준 가격 결정권을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 패권 경쟁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3.3. 중국의 사례 분석

중국은 최근 5G 표준특허 패밀리 점유율에서 40% 이상을 점유하며 글로벌 1위 국가로 도약함에 따라, 과거 수동적인 기술 실시자의 지위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인 사법 관할권의 주도자로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다.³²⁾ 중국 사법부는 자국 기업 보호와 첨단 산업 생태계

30) 판결의 핵심 파급효과는 영국 법원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라이선스 = 산업 관행”을 인정해 전 세계 SEP 로열티율 법정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 다국적 기업(Huawei, Samsung 등)의 국가별 분쟁이 글로벌 일괄 라이선스로 바뀌었고, 협상 결렬 시 법원이 FRAND 로열티 직접 결정하는 영국/EU 방식이 정립됐다. *Conversant v Huawei*(UKSC 37 (Supreme Court, 26 August 2020))등 후속 판결에도 적용됐으며, 국가별 소송이 글로벌 패키지 딜로 전환해 불확실한 요율이 법정 기준으로 안정화됐다. 결과적으로 SEP 보유자 협상력이 상승되고, 사용자 부담은 내려가며, 5G 라이선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31) *Unwired Planet v Huawei* 1심(EWHC 808 (Pat) (High Court, 16 April 2018))에서 정한 글로벌 FRAND 로열티율은 전체 SEP 포트폴리오에 대한 판매가격(Average Selling Price: ASP) 0.13%(4G), 0.065%(2G/3G)로, 즉, ASP 300달러 핸드셋 1억대 판매 시 약 3,900만 달러이다. 글로벌 적용(영국-미국-중국 등 전 세계 판매량 기준)이 핵심이며, ASP가 높으면 고정 달러 캡 적용하고 삼성 라이선스 등 비차별 원칙으로 조정했다.

32) 新华社, “工业和信息化部: 我国5G标准必要专利声明量全球占比达42%”, News.cn, <https://www.news.cn/2023-10/20/c_1129928394.htm>, 작성일: 2023. 10. 20.

육성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SEP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기제로서 반소송금지명령(ASI)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사법해석을 통해 반소송금지명령(ASI) 발급을 법적·절차적으로 공식화하였다.³³⁾ 반소송금지명령(ASI)은 자국 내 소송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가 타국 법원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외국 판결의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타국 사법부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성격을 띠며, 중국 법원이 글로벌 FRAND 요율 결정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사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막이자 공격적인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³⁴⁾

중국 법원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장 전략을 상징하는 대표적 판례는 삼성전자와 에릭슨 간의 분쟁인 *Samsung v. Ericsson*이 바로 그것이다.³⁵⁾ 당시 중국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에릭슨이 전 세계 어느 법원에서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이나 요율 결정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반소송금지명령(ASI)을 발령하였다. 이는 영국 법원이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을 통해 선언한 글로벌 요율 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로서, 중국 법원 역시 글로벌 FRAND 요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법적 적격성을 갖추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사건으로 평가된다.³⁶⁾

중국 법원은 미국이나 유럽 법원과 차별화된 독자적인 법리적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합리적 로열티 산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유럽 법원이 라이선스 협상 절차의 선의성(Willingness)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 법원은 표준 기술의 공공성(Publicity)과 필수불가결한 접근성을 최우선 가치로 강조한다. 이러한 법리적 기초 하에서 중국 법원은 SEP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며, *Huawei v. InterDigital*³⁷⁾ 및 *Huawei v. Conversant*³⁸⁾ 사건 등에서 서구권 법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로열티율을 산정함으로써 자국 제조사(실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나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금지명령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글로벌 사법 관할권 경쟁(Jurisdictional Competition)을 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법원의 선제적인 반소송금지명령(ASI) 발령은 국가 간 사법 판결의 불일치를 구조화하고, 국제사법상의 예양(禮讓, Comity)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국제 사법 공조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발표한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标准必要专利

33) Jonathan M. Barnett & Sean M. O’Connor, *5G an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Internet of Th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pp. 215-216.

34) Ibid., pp.219-221.

35) 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2020)鄂01知民初743号民事裁定书. 이 판결은 삼성과 Ericsson의 SEP/FRAND 분쟁에서 중국 법원이 진행 중인 FRAND 요율(라이선스 조건) 결정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Ericsson이 해외에서 병행 소송·집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막는 반소송금지명령(행위보전)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Ericsson이 중국의 법원·기관에 SEP 기반 금지명령(예비/영구)이나 행정조치를 신청하거나, 해외 법원에 로열티율/로열티 금액·FRAND 이행 여부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유지·집행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했다.

36) Jonathan M. Barnett & Sean M. O’Connor eds., op. cit., pp. 221-223.

37) 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2020)鄂01知民初169号之一民事裁定书. InterDigital이 해외(예: 인도)에서 금지명령 신청/집행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국가 법원에서 로열티율 결정을 받는 시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병행소송을 통제했다.

38) 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书(2019)最高法知民终732、733、734号之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판결(금지명령 등)의 집행 신청을 Conversant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 중국 내 FRAND/SEP 관련 절차의 실효성을 보호했고, 위반 시 일 100만 위안의 누적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反垄断指引), 2024'는 SEP 보유자의 불성실한 FRAND 약속 이행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예방적 차원의 연성 규제(Soft Law)를 도입하는 등, 사법부를 넘어 행정 당국 차원에서도 SEP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³⁹⁾ 이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반소송금지명령(ASI) 전략은 단순한 소송 방어 기법을 넘어,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에서 자국 산업 인프라를 수호하고 글로벌 표준 규범 제정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로 기획된 국가 차원의 법적 방어 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3.4.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SEP 보유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가 경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율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해왔다. 이러한 집행 기초의 정점이자 주목을 받은 사례는 2017년 처분 후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퀄컴(Qualcomm, 이하 한글로 표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다.⁴⁰⁾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모뎀 칩셋 제조 시장과 SEP 라이선싱 시장에서 보유한 이중적 지배력을 상호 연계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였다. 퀄컴은 2G부터 5G에 이르는 이동통신 기술 전반에 걸친 압도적인 SEP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모뎀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부당하게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퀄컴의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이 위법성을 최종 인정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남용 행위로 유형화된다.

첫째, 소위, No License, No Chip 정책의 강제성 관련된 남용행위이다. 퀄컴은 자사와 포괄적 SE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말기 제조사(Samsung, Apple 등)에 대하여 핵심 부품인 모뎀 칩셋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을 위협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였다. 이는 필수 요소(Essential Facility)에 준하는 칩셋 공급을 불모로 실시자의 협상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라이선싱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왜곡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둘째,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행위이다. 퀄컴은 경쟁사인 인텔(Intel), 미디어텍(MediaTek) 등이 요청한 SEP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인 조건만을 제시하였다. 이는 SEP 보유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기술 혁신을 봉쇄하여 칩셋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려는 배제적 남용 행위로 분석되었다. 셋째, 포괄적 라이선스 강요 및 로열티 산정 방식의 문제이다. 퀄컴은 특허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부품인 칩셋 가격이 아닌, 완제품인 휴대폰 전체 판매가액(Net Selling Price)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관행을 고수하였다. 이는 특허 기술의 기여도를 현저히 상회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수취이자, 국내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퀄컴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39)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标准必要专利反垄断指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https://www.csrc.gov.cn/beijing/c105536/c7582586/content.shtml>>, 작성일: 2025. 9. 10.

4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공2023상.850].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정위가 퀄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과징금(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상당 부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첫째, 특허권의 절대성 완화와 경쟁법적 통제이다. 특허법상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표준 채택으로 인해 형성된 사실상의 시장 지배력과 결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경쟁 당국의 엄격한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둘째, 실시자 보호 및 공정 경쟁 기반의 회복이다. 이 판결은 기회주의적 권리 행사인 특허 홀드업(Patent Hold-up)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제조사의 라이선싱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글로벌 칩셋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시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소송 등 주요국 SEP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 등 국내 규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초석이 되었다.

종국적으로 퀄컴 사건은 SEP 보유자가 기술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수취하는 것을 넘어, 표준이라는 공적 인프라를 매개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린 경고이자, 국내 SEP 규제 법리의 이정표를 정립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⁴¹⁾

3.5. 소결

영국, 중국,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와 법리를 분석했을 때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SEP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개별적 권리 구제에서 포괄적 관할권 선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특허의 속지주의라는 전통적 국제사법 원칙을 뛰어넘어, 한 국가의 법원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을 강제할 수 있는 선례를 확립하였다. 이는 사법적 효율성과 거래 비용 감소라는 명분 하에, 사실상 자국 법원의 판결 효력을 국경 너머로 확장시키는 사법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둘째, 국가별 산업 전략에 따라 사법부의 법리 해석과 대응 방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중국 법원은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급성장한 특허 점유율을 무기로 반소송금지명령(ASI)을 적극 활용하며 사법 주권을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로열티율을 유도하여 자국 제조 산업(실시자)을 보호하는 전략적 판결 경향을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 집행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SEP 남용 행위를 경쟁법적 틀 안에서 규제하는 독자적인 규제 모델을 정립하였다. 이는 사법적 관할권 확장보다는 시장 질서의 공정성 회복에 방점을 둔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셋째, 이러한 관할권 경쟁의 과열은 국제 사법 공조의 위기와 법적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의 정면충돌은 기업들에게 이중 소송의 부담과 상충되는 판결 이행의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이 타국 법원의 소송 진행을 가로막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 예양(禮讓, Comity)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표준 기술의 원활한 확산을 저해하는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의 글로벌 SEP 분쟁 지형은 각국이 자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법적 도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의 합의된 가이드라인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 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법적 충돌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같은 견해로는 추진열, 앞의 논문, 352-353면.

4. 글로벌 SEP 분쟁 해소와 국내 대응을 위한 법·정책적 제언

4.1. 총설

이 글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SEP에 대한 법적 쟁점과 FRAND 약속의 본질을 규명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사법 관할권 경쟁의 양상과 함의를 고민하였다. 앞서 전개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SEP 분쟁 지형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분쟁의 성격이 고도화되었다. 과거의 SEP 소송이 개별 특허의 침해 여부나 로열티 액수를 다투는 미시적 분쟁이었다면, 현재는 한 국가의 법원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거나(영국), 타국 법원의 재판 절차 자체를 봉쇄하는(중국) 등 국가의 사법 주권과 산업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시적·전략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는 SEP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전략 물자(戰略物資, Strategic Asset)로 격상되었음을 방증한다. 둘째, 법적 불확실성이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영국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 이후 촉발된 글로벌 효율 결정권 경쟁과 이에 대응한 중국 법원의 반소송금지명령(ASI) 및 반반소송금지명령(Anti-Anti-Suit Injunction: AASI)의 연쇄적 발령은 국제 사법 공조의 근간인 예양 원칙을 형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파편화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전문 학적인 소송 비용과 이중적인 법적 의무를 강요함으로써, 경영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술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혁신의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는 자명(自明)하다. 대외적으로는 각자도생식의 무분별한 관할권 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세계적인 SEP 보유 기업과 다수의 중소 실시 기업이 공존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혁신 유인을 보호하면서도 라이선싱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사법 관할권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방안과 국내 중소기업 보호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국제 사법공조 및 ADR 체계 강화

글로벌 SEP 분쟁의 사법 관할권 경쟁과 불확실성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축으로 정리한 뒤, 각 방안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주요국 법원들이 중복 소송을 억제하고 판결의 상호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 합의를 만들기 위해 사법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글로벌 SEP 분쟁은 개별 기업 간의 사적 권리 다툼을 넘어, 각국 법원이 글로벌 효율 결정권을 선언하거나 반소송금지명령(ASI) 및 이에 대응하는 반반소송금지명령(AASI)을 동원하여 자국의 사법 주권을 수호하려는 사법 관할권 경쟁(Jurisdictional Competition)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파편화는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거래 비용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층적인 국제 공조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영국 법원의 확장적 관할권 행사와 중국 법원의 ASI 발령은 국제사법상 존중되어야 할 국제 예양(International Comity)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요국 법원 간의 사법 공조를 통해 중복 소송을 억제하고 판결의 상호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법학회(American Law Institute: ALI)나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ELI) 등 권위 있는 학술 기구와 연계하여 SEP 소송에 관한 국제 모범 기준(Model Rules)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FRAND 효율 산정 방식

(Top-down vs. Bottom-up)에 대한 통일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어느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예측 가능한 판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리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⁴²⁾

둘째, 고비용·장기화된 각국 소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중재·조정 기능을 SEP 분쟁의 글로벌 허브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비용·장기화의 속성을 지닌 각국 법원의 소송 절차는 급변하는 기술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 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SEP 분쟁 해결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⁴³⁾ 단순한 권고를 넘어, 표준화기구(SSO)의 IPR 정책에 소송 전 의무적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술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SEP 전문 중재 패널을 상설화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고, 분쟁 해결 과정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ADR 참여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⁴⁴⁾

셋째, SEP 남용은 국경을 넘는 문제인 만큼 OECD·ICN 차원에서 경쟁법 집행 기준을 정합화하고, 켈컴 사건처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주요 경쟁당국이 초기부터 협력하는 다국가 동시 조사(Parallel Investigation) 체계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SEP 남용 행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개별 국가 경쟁 당국의 독자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차원에서 SEP 라이선싱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기준을 통일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⁴⁵⁾ 특히 켈컴 사건과 같이 글로벌 시장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SEP 남용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EU 등 주요 경쟁 당국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협력하는 다국가 동시 조사(Parallel Investigation) 체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및 경제 분석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과 시정명령의 범위에 대해 사전·사후 협의를 거침으로써 규제 강도의 불균형과 이중 제재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 체계 내에 디지털·표준 기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SEP 관련 부속 합의(Annex)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부속 합의에는 SEP 보유자의 권리

42)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원칙적으로 표준 전체에 대한 누적 로열티 상한(Royalty Stack Cap)이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Top-down 방식을 우선 적용하되, 해당 상한의 객관적 산정이 곤란하거나 신뢰 가능한 표준 필수 특허 풀(pool)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Bottom-up 방식을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이원적 적용 구조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Top-down 방식 적용 시에는 표준 기여도 평가의 기준(특히 수 기준 배제, 기술적 가치 중심 평가), 비교 대상 로열티 풀의 선정 요건, 개별 SEP의 비중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고, Bottom-up 방식의 경우에도 비교 라이선스의 적격성 요건(제결 시점, 협상 대등성, 소송 압박 배제), 비밀 라이선스의 증명력 한계, 지역별·제품별 로열티 조정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43)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SEP 권리자 또는 실시자가 법원에 FRAND 요율 산정이나 가처분을 청구하기 이전에 일정 기간(예: 90~120일)의 WIPO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절차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후 소송에서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WIPO 중재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는 조정·중재 연계(Med-Arb) 모델을 제도화 해야 한다.

44) 이는 통신·반도체·표준화 실무 경험을 갖춘 기술 전문가와 국제 지식재산 및 경쟁법 전문가로 구성된 'SEP 전문 중재 패널'을 WIPO 내에 상설화함으로써, 요율 산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패널 제도는 분쟁 해결 과정의 비밀성 유지와 신속한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전략적 소송이나 관할권 쟁점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DR을 선택할 유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45) 구체적으로 OECD 경쟁위원회 차원에서는 SEP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FRAND 확약 위반의 경쟁법상 평가 기준, SEP 보유자의 가처분 신청이 배타적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의 차별적 조건 부과 및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규율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공통 집행 가이드라인(Best Practices)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각국 경쟁 당국 간 사건 정보 공유, 경제 분석 방법론, 시정조치 유형을 표준화함으로써 집행 단계에서의 실질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행사와 경쟁 제한 행위 간의 균형 원칙, FRAND 확약의 국제적 효력, 경쟁 당국 간 협력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경쟁법·지식재산권·무역 규범이 교차하는 영역에서의 글로벌 규범적 질서를 단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4.3. 중소기업 SEP 대응체계 구축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SEP 라이선싱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열위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몇 가지 제안으로 묶어 하나씩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약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국내의 주요 판례에서 형성된 법리를 더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5G, IoT 등 신산업 진출 과정에서 SEP 보유자 대비 심각한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의 열위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과도한 로열티 부담과 불투명한 라이선스 관행은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정한 라이선싱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와 지원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SEP는 일반 특허와 달리 표준 채택을 통해 ‘대체 불가능성’을 획득하므로, 그 권리 행사가 시장 전체의 경쟁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사적 계약의 영역이나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맡겨두기보다는, 법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 명시적인 규정(예규 및 법률)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허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 과정에서 부여된 독점적 지위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절차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에서 이처럼 중소·중견기업의 보호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글로벌 제조사와 달리 중소기업은 SEP 보유자의 ‘깜깜이’ 라이선스 요구에 대응할 법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는 ‘협상력의 극심한 비대칭’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 5G·IoT 등 표준 기술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소 부품·단말 제조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공익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가 특허권자의 정당한 수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성실 협상 의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의 핵심으로 설정하여 권리자와 실시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현행 특허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퀵결 판결 및 언와이어드 플래닛(Unwired Planet) 판결 등 국내외 주요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를 명문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실 협상 의무의 판단 기준을 절차적 단계로서 1단계 침해 통지, 2단계 라이선스 의사 표명, 3단계 FRAND 조건 제시, 4단계 역제안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표1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신설(案)>

<p>III. 구체적 판단 기준</p> <p>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p> <p>(신설) 다. FRAND 확약에 따른 성실 협상 의무의 구체화</p> <p>① 표준필수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경우, 해당 특허권자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Good Faith Negotiation Duty)를 부담한다. 성실 협상 의무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적 단계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p> <p>1. 침해 통지 단계</p> <p>표준필수특허권자는 침해 주장 시 해당 특허의 번호, 표준과의 관련성, 침해 주장 대상</p>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단순한 포괄적·추상적 경고에 그쳐서는 아니 된다.

2. 라이선스 의사 표명 단계
 잠재적 실시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허락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이를 이유 없이 무시하거나 협상을 지연하는 행위는 성실 협상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FRAND 조건 제시 단계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실시료 산정의 근거,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Comparable Licenses)의 존재 여부, 적용된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FRAND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역제안 및 협상 단계
 잠재적 실시권자의 역제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협상과 무관한 조건을 추가하여 협상을 교착시키는 행위는 성실 협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② 위 각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SEP 보유자가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비공개유지협약(NDA)을 악용해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집행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체적 금지 유형으로 명시해 규제의 기준을 선명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SEP 보유자가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비공개유지협약(NDA)을 악용하여 비교가 가능한 라이선스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위법 행위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표2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과정에서의 명백한 위법 행위 유형” 신설(案)>

III. 구체적 판단 기준

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
 (신설) 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싱 과정에서의 명백한 위법 행위 유형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위법행위 유형)로 본다.

- (1) FRAND 확약을 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객관적 기술 가치나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수준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행위
- (2) 비공개유지협약(NDA)을 이유로 비교 가능한 라이선스 정보의 핵심 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잠재적 실시권자가 FRAND 조건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3) 실시허락 협상과 무관한 비표준필수특허의 상호실시허락, 경쟁기술의 사용 제한, 부쟁의무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
- (4) 성실 협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해금지청구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SEP 라이선싱 분쟁의 근본 원인은 선언된 특허 중 실제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과잉 선언 문제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산하에 독립적인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센터를 설치하고, 공신력 있는 필수성 평가 리포트를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협상 자료로 활용토록 지원해야 한다.

<표3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표준필수특허 과잉 선언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 신설(案)>

<p>III. 구체적 판단 기준</p> <p>5. 표준기술 관련 특허권의 행사</p> <p>(신설) 마. 표준필수특허 과잉 선언에 대한 경쟁법적 고려</p> <p>① 표준필수특허의 선언은 해당 특허가 실제로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과잉 선언(Over-declaration)은 실시권자의 협상 비용 증가, 시장 진입 장벽 형성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필수특허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언된 특허 중 실제 필수성이 인정되는 특허의 비율, 필수성 검증 결과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p> <p>③ 이를 위하여 특허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독립적인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체계의 구축을 촉진하고, 공신력 있는 필수성 평가 결과가 분쟁 당사자의 협상 및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

넷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표준화기구(SSO)의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SEP 선언 시 ‘청구항-표준 규격 매핑(Claim Chart)’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선언 제도는 특허 번호만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실시자가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깜깜이 협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매핑 정보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과잉 선언을 억제하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협상력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주기적 실무·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거대 SEP 보유자의 공세에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SEP 분쟁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당 지원단은 경고장 접수 단계부터 협상 전략 수립, 로열티 산정 적정성 분석,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컨설팅한다. 이와 동시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펀드’를 조성하여 소송 비용 대출, 무효심판 청구 비용, 라이선스 비용 보조 등 재정적 방어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으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 수용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4.4. 단계적 입법을 통한 표준필수특허 규율 체계의 정립

SEP를 둘러싼 갈등은, 특허법이 전제하는 사적 자치와 배타적 권리 보호의 논리와 경쟁법이 지향하는 공정 거래·시장 개방의 논리가 맞부딪치는 지점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이중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특허법과 경쟁법을 각각 ‘부분 수선’하는 수준을 넘어, 두 법 영역을 연결·조정할 수 있는 독자적 규율 체계 구축까지 시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정은 단번의 포괄적 입법보다, 핵심 규범을 먼저 정립하고 점진적으로 체계화하는 단계적 입법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체계 안에서 시급한 규범 공백부터 메우는 작업이 우선이다. 먼저 특허법 영역에서는 FRAND 약속의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하고, SEP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가 허용되기 위한 제한 요건을 구체화해 법원의 판단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SEP 라이선싱 과정에서의 남용을 시장지배력 남용 유형으로 보다 분명히 정리하고, 성실 협상 의무 위반·차별적 라이선스·과도한 로열티 요구 등이 경쟁

제한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집행 기준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SEP는 표준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어서 접근 가능한 기술 이용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 반면, 권리 행사는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을 미친다. 그럼에도 현행 체계가 FRAND 약속의 효력과 금지청구 제한의 경계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적 관할권 경쟁까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SEP 규율의 명문화에 대한 타당성은 ‘사법적 비용의 최소화’와 ‘글로벌 정합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FRAND 약속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부재하여 분쟁 때마다 소모적인 법리 다툼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불확실한 해석론을 입법적으로 정리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규범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최근 EU가 SEP 규정(SEP Regulation) 도입을 통해 규범의 명확성을 꾀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⁴⁶⁾ 따라서 이번 개정 방향은 FRAND 약속의 구속력과 SEP 기반 금지청구의 제한 요건을 법률에 명문화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와 공정한 기술 이용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표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안)>

현행	개정안
	FRAND 약속의 법적 구속력 명문화 (안 제3조의2 신설)
<신설>	제3조의2 (표준필수특허의 실시허락 의무 등) ①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공정·합리적·비차별적(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경우, 해당 확약은 표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실시허락 의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을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선행 의무로 작용하며, 특허권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6)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4월 SEP 규정 초안을 발표하며,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SEP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허의 필수성 평가, FRAND(공정·합리·비차별) 라이선스 기준 명확화 등을 목표로 했다. 이는 SEP 보유자와 실시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회는 2024년 2월 이를 승인했으나 최종 합의 실패로 2025년 초 철회되었다.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European Parliament moves SEP Regulation forward”, Technology Quotient, <<https://technologyquotient.freshfields.com/post/102j1db/european-parliament-moves-sep-regulation-forward>>, 검색일: 2026. 3. 5.

<p><신설></p>	<p>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제한 (안 제126조의2 신설)</p> <p>제126조의2 (표준필수특허권 행사의 신의칙상 제한 등)</p> <p>①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실시허락 확약(FRAND)을 한 경우에도 그 배타적 권리에 기초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잠재적 실시권자가 실시허락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성실 협상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잠재적 실시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허락을 받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 여부 2.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실시허락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3. 당사자 간 협상 경과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수단의 활용 노력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실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금전적 보상만으로 권리 구제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가 허용된다.</p>
<p><신설></p>	<p>제304조의2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가처분 심리의 특례)</p> <p>제304조의2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가처분 심리의 특례)</p> <p>① 법원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제126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정 및 당사자의 성실 협상 여부를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고려한다.</p> <p>② 법원은 실시허락을 통한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와 가처분이 경쟁 및 표준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p>

<신설>	분쟁해결절차 이행의 실효성 확보 (안 제126조의3 신설)
	제126조의3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 활용 및 제한) ①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조정·중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1차적 규범 정비는 즉각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보다 종합적인 입법을 위한 기준과 집행 경험을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분산된 규범과 판례, 집행 기준을 통합·체계화한 「표준필수특허 공정화법(안)」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단독법은 FRAND 확약의 법적 성질,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금지청구 제한 원칙, 적정 로열티 산정의 기본 구조, 분쟁 해결 절차 등 SEP 규율의 핵심 요소를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 밀도 있게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결적인 모델이다. 물론 규범의 명문화는 사법적 비용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자칫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특허 보호 수준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EU가 제정한 ‘SEP 규정(Regulation, 2024)’은 필수성 검증 및 로열티 산정의 투명성을 법제화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을 넘어 경제산업성 주도로 요율 산정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입법례는 사후적 분쟁 해결에 의존하는 현행 모델의 한계를 입증하며, 명문화된 규범이 오히려 권리자와 실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다만, 동시에 특허권 과잉 제한 논쟁, 기존 특허법·공정거래법·민사집행 및 소송법과의 경계 설정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특별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국제적 오해 가능성 등 현실적 리스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구분	법의 절(節)	입법 목적	주요 내용
제1장	입법 목적과 기본 원칙	특허법(권리 보호)과 경쟁법(시장 질서)의 교차 영역을 조정하는 특별법	- 기술 표준의 확산 촉진 및 공정한 접근 보장 - 특허권자의 정당한 보상과 실시자의 예측 가능성 간 균형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
연구 제언	특허 보호와 공정 경쟁의 균형을 맞추어 혁신 보상과 기술 접근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산업 질서법임. 특허 홀드업과 실시자 홀드아웃을 억제하여 건강한 표준 기술 생태계 성장 목표		
제2장	적용 대상 및 기본 개념 정립	SEP 규율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적 기준 설정	- 표준필수특허(SEP)의 정의 - 표준화기구(SSO)의 범위 - FRAND 확약의 개념 및 적용 요건 - 실시자, 잠재적 실시자, 불성실 협상자의 개념

구분	법의 절(節)	입법 목적	주요 내용
연구 제언	기술적 회피 불가능성 등 실질적 기준을 바탕으로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 기구의 범위 정의, 실시자와 협상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사법적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판단 기준 도출		
제3장	FRAND 확약의 법적 성질 및 효력	FRAND 확약을 둘러싼 특허·계약·신 의칙 논쟁을 입법으로 종결	- FRAND 확약의 법적 구속력 명문화 - 제3자 보호효(실시자의 직접 청구권) 인정 여부 명확화 - 확약 위반 시 효과(손해배상, 금지청구 제한 등)
연구 제언	FRAND 확약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명문화하여 제3자인 실시자의 수익자 권리를 인정함. 확약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제한 등의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명시하여 실효성 확보		
제4장	성실 협상 의무 및 금지청구 제한	SEP 분쟁의 핵심 쟁점인 협상 구조를 법률로 정형화	- SEP 보유자·실시자 쌍방의 성실 협상 의무 - 침해 통지, FRAND 조건 제시, 역제안 및 협상 단계 명문화 - 불성실 협상의 판단 기준
연구 제언	침해 통지부터 반대 제안까지의 협상 절차를 법적으로 정형화하여 객관적인 협상 기준을 제공함. 분쟁의 초점을 힘의 논리가 아닌 절차적 정당성으로 유도하여 불성실 협상을 방지함		
제5장	침해금지청구 제한 원칙	SEP에 대한 배타적 금지청구권 행사 통제	- (원칙) FRAND 확약이 있는 SEP에 대해서는 금지청구 제한 - (예외) 실시자의 명백한 협상 거부 및 전략적 지연
연구 제언	SEP의 배타적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FRAND 확약 시 원칙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함. 단, 실시자가 협상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청구를 허용함		
제6장	적정 로열티 산정의 기본 구조	글로벌 분쟁의 최대 불확실성 요소를 구조적으로 통제	- 로열티 산정의 기본 원칙(기술적 기여도 중심) - 로열티 누적(Royalty stacking) 고려 의무 산정 방식 선택 기준
연구 제언	기술 기여도 중심의 하향식(Top-down) 산정 방식을 우선하여 로열티 결정의 구조적 틀을 제시함. 구체적인 요율 숫자보다는 산정 절차를 규율함으로써 과잉 규제 논란을 피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		
제7장	로열티 산정 절차 및 입증 책임	분쟁 시 실질적 판단 기준 제공	- 비교 라이선스의 활용 기준 - 입증 책임의 분배 원칙으로 누가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연구 제언	비교 라이선스의 범위와 입증 책임 분배 원칙을 확립하여 재판 및 중재 과정의 공정성 제고함. 판단 기준의 객관화를 통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제8장	SEP 남용 행위의 규율	SEP의 경쟁 제한적 행사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	- 과도한 로열티 요구 - 차별적 라이선스 제공, FRAND 확약에 반하는 금지청구
연구 제언	차별적 라이선스 제공이나 과도한 로열티 요구 등 SEP 남용 행위를 위법 행위로 유형화함. 공정 거래법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감시 체계 구축		
제9장	분쟁 해결 절차의 특례	SEP 분쟁의 국제성·기술성을 반영한 절차 설계	- 소송 전 ADR(조정·중재) 활용 원칙 - 전문 중재 및 조정 패널의 법적 근거 - 외국 판결·중재판정과의 관계
연구 제언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해 소송 전 ADR(대안적 분쟁 해결)을 원칙화하고 전문 중재 패널을 마련함. 해외 판결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국가 간 관할권 경쟁(쇼핑)을 억제함		

구분	법의 절(節)	입법 목적	주요 내용
제10장	기존 법률과의 관계 정리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장	- (특허법과의 관계) 특별법 우선 적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병존 규율 원칙 - (민사집행·소송법과의 관계) 절차 특례 범위
연구 제언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법적 충돌을 방지함. 민사 소송 및 집행법상 특례를 규정하여 법 집행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함		
제11장	국제 정합성 및 보충 규정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 선언	- 국제 조약·주요국 법제와의 정합성 선언 - 시행령·고시 위임 근거 - 단계적 시행 및 경과 규정
연구 제언	글로벌 표준 및 국제 조약과의 일치성을 강조하여 한국만의 독자적 규제라는 오해를 불식함. 단계적 시행 및 하위 법령 위임 근거를 두어 법률의 안정적인 연착륙 도모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정적인 입법 경로는 2단계 입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1단계에서는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당장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공통 규범을 확립하고, 2단계에서 그 집행 성과와 해석 기준을 종합하여 「표준필수특허 공정화법(案)」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단독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의 창설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법리와 제도를 정리·통합하는 작업으로 설명될 수 있어, 정책 수용성과 입법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단계적 입법 전략은 행정 지침 중심의 불안정한 규율을 넘어, SEP 분쟁 해결에 있어 국내외 기업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과 국제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표준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입법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표준의 개방성과 특허의 배타성이 맞닿는 지점에서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FRAND 확약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요율 산정, 구제수단, 관할권 경쟁에서 나타나는 핵심 쟁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영국·중국·우리나라의 대표 사례를 통해 글로벌 분쟁 지형이 단순한 권리 다툼을 넘어 사법 주권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FRAND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보상과 실시자의 공정한 기술 접근이라는 상충 가치를 조정하는 핵심 규범이며, 분쟁 해결의 목표도 제로섬 분배가 아니라 표준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과 혁신 유인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은 글로벌 요율 결정을 둘러싼 접근과 소송을 봉쇄하는 절차적 수단이 충돌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영국의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을 통해 국내 침해 분쟁을 단초로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포럼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중국은 반소송금지명령(ASI)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국내 절차를 방어하는 동시에 글로벌 FRAND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전면화함으로써 국제예약을 둘러싼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법 관할권 확장보다 경쟁법적 통제와 시장질서 회복에 무게를 둔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금지청구의 남용이나 성실협상 결여를 경쟁법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왔고, 성실협상 여부를 가늠하는 판단 요소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규율의 방향성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책과 입법의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제적으로는 관할권 경쟁을 완화할 최소한의 절차 합의가 필요하며, 중복 소송과 상충 판결, 반소송금지명령과 이에 대응하는 명령의 연쇄를 줄이기 위한 법원 간 공조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비용 장기화가 불가피한 소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을 실질적 수단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 조정 체계를 분쟁의 글로벌 허브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도 설계의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중소 중견기업이 정보 비대칭과 협상력 열위로 불리한 관행을 떠안지 않도록 위법 유형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수성 검증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률 재정 지원을 포함한 분쟁 대응체계를 상시화하는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EP와 FRAND 규율의 장기 해법은 특허법과 경쟁법을 대립시키기보다 두 영역을 연결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단기에는 FRAND 약속의 구속력, SEP 기반 금지청구 제한 기준, 남용 유형과 성실험상 평가 요소 등 핵심 공백을 우선 보완하고, 중장기에는 축적된 판례와 집행 경험을 통합해 표준 기반 산업 질서 관점의 단독법으로 체계화하는 이단계 로드맵이 가장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혁신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측 가능한 라이선싱 질서를 형성해 초연결 산업으로 확장되는 표준 경쟁 환경에서 한국이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서양)

Jonathan M. Barnett & Sean M. O'Connor, *5G and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Internet of Th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학술지(국내)

박준석, “표준특허의 제문제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4호(2013).

이상미, “표준필수특허(SEP) 과잉선언의 문제와 필수성 재고 방안”,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4호(2022).

이풍원·정차호, “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2025).

추진열, “FRAND 조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확약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 31897 판결을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제48권(2023).

학술지(서양)

Adam Mossoff, “Patent Injunctions and the FRAND Commitment: A Case Study in the ETS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38(2023).

Alexander Galetovic et al., “An Estimate of the Average Cumulative Royalty Yield in the World Mobile Phone Industry: Theory, Measurement and Results”,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42 No.3(2018).

Joseph Farrell et al., “Standard Setting, Patents, and Hold-Up”, *Antitrust Law Journal*, Vol.74 No.3(2007).

Mark A. Lemley & Carl Shapir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Texas Law Review*, Vol.85(2007).

Michael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A Concise Introduction and Lexicon”, *The Modern Law Review*, Vol.76 No.1(2013).

Mohd Javaid et al., “Digital economy to improve the culture of industry 4.0: A study on feature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Green Technologies and Sustainability*, Vol.2 No.2(2024).

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 (2020)鄂01知民初743号民事裁定书.

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 (2020)鄂01知民初169号之一民事裁定书.

最高人民法院 (2019)最高法知民终732, 733, 734号民事裁定书.

CJEU, Huawei Technologies Co. Ltd v ZTE Corp., Case C-170/13 (16 July 2015).

Microsoft Corp. v. Motorola, Inc., 795 F.3d 1024 (9th Cir. 2015).

Unwired Planet v Huawei [2018] EWHC 808 (Pat) (영국 고등법원 1심).

인터넷자료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标准必要专利反垄断指引”,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https://www.csrc.gov.cn/beijing/c105536/c7582586/content.shtml>>, 작성일: 2025. 9. 10.

新华社, “工业和信息化部: 我国5G标准必要专利声明量全球占比达42%”, News.cn, <https://www.news.cn/2023-10/20/c_1129928394.htm>, 작성일: 2023. 10. 20.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European Parliament moves SEP Regulation forward”, Technology Quotient, <<https://technologyquotient.freshfields.com/post/102j1db/european-parliament-moves-sep-regulation-forward>>, 검색일: 2026. 3. 5.

- Kevin Winters, “Cumulative mobile-SEP royalty payments no more than around 5% of mobile handset revenues”, IP Finance, <<http://www.ip.finance/2015/08/cumulative-mobile-sep-royalty-payments.html>>, 검색일: 2026. 1. 28.
- Ming-Tao Yang & Jinwoo Kim, “Managing the Unavoidable—Recent Developments in Standard Essential Patent Litigation in the U.S. and Europe”, Finnegan, <<https://www.finnegan.com/en/insights/articles/managing-the-unavoidablerecent-developments-in-standard-essential-patent-litigation-in-the-us-and-europe.html>>, 검색일: 2026. 1. 28.
- UK Supreme Court, “Unwired Planet International Ltd v Huawei Technologies (UK) Co Ltd UKSC 37”, UK Supreme Court,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18-0214>>, 검색일: 2026. 1. 28.

연구보고서

- 배진원 외 5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산업입지 전략 연구”, 산업연구원, 2022.
- 이경선 외 7인,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 및 혁신공유 방안 연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
- Chryssoula Pentheroudakis & Justus A. Baron, “Licensing Terms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Cases”,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7.
- European Commission, “Empirical Assessment of Potential Challenges in SEP Licensing”, European Commission, 2023.
- Rabah Amir & Adriana Gama, “On Cournot’s Theory of Oligopoly with Perfect Complements”, Documentos de Trabajo No. IV-2025,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2025.